

	<h2 style="margin: 0;">학생간부 선거규정</h2>	제정일자	1985. 3.16
		개정일자	2016. 8. 1
		페이지	1-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6조에 따라 학생회장·부학생회장·대의원회 의장·대의원회 부의장·각 학부(과) 학회장·부학회장(이하 “학생간부”라고 한다.)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학생간부 선거의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있다.(개정 2012. 2. 1, 2012. 10. 11, 2016. 8. 1)

1. 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선거의 경우 : 주간 및 2부 재학생(산업체위탁교육 및 전공 심화과정 재학생을 2부 재학생」이라 한다)(개정 2012. 10. 11)
2. 주간 부학생회장 및 주간 대의원회 부의장 선거의 경우 : 주간 재학생
3. 2부 부학생회장 및 2부 대의원회 부의장 선거의 경우 : 2부 재학생
4. 학회장 및 부학회장 선거의 경우 : 해당 학부 또는 학과 재학생

제3조(피선거권) ① 학생간부를 선출하는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1)

1.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해당 학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개정 2012.10. 11)
2.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3.0(B0) 이상을 취득한자로 학적부 기재상의 유급 및 경고, 성적포기, 제적(미등록제적포함)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개정 2012. 10. 11, 2013. 8. 1, 2015. 9.10)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자[실효된 형의 포함](개정 2012. 10. 11, 2013. 8. 1)
5. 선거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자. 다만, 야간과정의 학생간부 후보자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6.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대의원회 부의장은 각각 선거권이 있는 5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단, 2부 부학생회장 및 대의원 부의장은 제외한다.(신설 2013. 8. 1) (개정 2016. 8. 1)
7.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입후보자에 한하여 자격여부를 판단 한 후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3. 8. 1)

② 학생간부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학과 1학년2학기~3학년2학기에 재학중인 자. 단,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및 대의원회 부의장은 졸업 직전년도 학년의 2학기에 재학 중인 자 만 입후보 할 수 있다.(개정 2016. 8. 1)

③ 학생간부를 역임한 자는 그 직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음 임기의 학생간부 선거에 입후

보할 수 없다.(개정 2011. 3. 1)

- ④ 학회장·부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는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3. 1)

제3조의2(선출인원) ① 학생회장·대의원회 의장은 각 1인을 선출한다.(조신설 2011. 3. 1)

- ② 부학생회장·대의원회 부의장은 주간 및 2부에서 각 1인을 선출한다.
- ③ 학회장은 학부(과)에서 1명을 선출하되 학부는 전공별 부학회장 중의 1인이 겸직 한다. 단, 최초 모집당시에 전공별로 모집하는 전공에 대해서는 모두 학회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6. 8. 1)
- ④ 부학회장은 주간 학부는 전공별 1명으로 하고, 2부는 모집단위별 1명을 선출한다.

제4조(투표방법) ①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 대의원회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개정 2011. 3. 1, 2013. 8. 1)

-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개정 2011. 3. 1)

제5조(임기) ① 총학생회 및 학회 간부의 임기는 1년(3. 1 ~ 익년도 2월 말) 으로 한다.

- ② 학생간부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제14조(벌칙)에 해당되는 자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개정 2011. 3. 1, 2013. 8. 1)
- ③ 2학기 개시일 이후의 회장(의장) 유고 시 주간 부회장(주간 부의장)이 대행하고, 주간 부회장(주간 부의장) 유고 시는 선출하지 아니하며 학부(과) 간부는 제 5조 2항에 따른다.
- ④ 학회장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1회에 걸쳐 입후보자 및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회대행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신설 2013. 8. 1)

제6조(선출시기) 학생간부의 선출 시기는 매 학년도 11월에 선출한다. 단, 11월중에 실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내에 실시한다.(개정 2011. 3. 1)

제7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학생회장 · 부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 대의원회 부의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 3. 1)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부/학과별 학회장 및 부학회장을 대상으로 해당 학부(과)장의 추천과 교학처장의 동의를 거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공고 후 7일 이내에 자동 해체한다.(개정 2011. 3. 1, 2012. 10. 11, 2013. 8. 1, 2015. 9.10)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1)

1. 선거일시 결정 등 선거계획 수립
2. 입후보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일체(개정 2013. 8. 1)
3. 선거인 명부 작성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5.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일체
6. 당선자 선포 및 공고
7.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조치
8. 선거 및 당선의 무효여부 심의(신설 2013. 8. 1)
9. 재선거(보궐선거) 여부결정(신설 2013. 8. 1)
10.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개정 2013. 8. 1)

- ④ 선거관리위원에게는 학생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운영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 3. 1)

-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3. 8. 1)
-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직무사항 및 예산의 집행은 교학처장의 사전승인 후에 결정 및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3. 8. 1) (개정 2015. 9.10)

제 2 장 학생회장·부학생회장·대의원회 의장·대의원회 부의장 선거(개정 2013. 8. 1)

제9조(입후보자등록) ① 학생회장 · 부학생회장 · 대의원회 의장 · 대의원회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복지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 2013. 8. 1)

- | | |
|--|--|
| 1. 입후보자 신청서 | 1부 |
| 2. 선거권이 있는 학생 50인 이상의 추천서 | 1부(개정 2016. 8. 1) |
| 3. 서약서 | 1부 |
| 4.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 | 각 1부(개정 2015. 9. 10) |
| 5. 투개표 참관인 추천서[당해년도 학생간부는 추천 불가] | 1부(개정 2013. 8. 1) |
| 6.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 신분조회 위임장[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1부(개정 2013. 8. 1)
1부(신설 2013. 8. 1) |
| 7. 소견문 | 1부 |
| 8. 해당학년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 사본 | 1부(신설 2012. 10. 11) |
| 9. 성적증명서 | 1부(신설 2012. 10. 11) |
| 10. 학적부 | 1부(신설 2015. 9. 10) |

- ② 전항 제2호에 의한 추천은 선거권자 1인이 각 선거별 1인의 후보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중복 추천시에는 추천인은 무효로 한다.(신설 2011. 3. 1)(개정 2012. 10. 11)
- ③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공고한다.(신설 2013. 8. 1)

제10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행할 수 있다.

- ②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후보 또는 당선취소를 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1회 개최한다. 단, 소견발표의 시기·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간소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어깨띠 등의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2. 10. 11)
- ⑤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일 오후 12시까지로 하며 투표 당일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 운동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3. 8. 1)
- ⑦ 입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마감 후 위원회의 입회하에 입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천으로 결정하되, 순서는 입후보 순서로 한다.(신설 2013. 8. 1)

⑧ 입후보자가 전항의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위반 후보자에 대하여 입후보자 등록 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

제10조의 2(사전선거운동 제한)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기간 중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공갈, 협박, 대리투표, 부정 입후보 출마,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를 방해하는 제반행위 등을 한 자에게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신설 2013. 8. 1)

제11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12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소정양식에 의거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 기표한다. 다만, 단독 입후보 시에는 찬·반 해당란에 기표한다.(개정 2012. 10.11)

② 선거인은 학생증 또는 본인의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③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투표소 및 개표소 내에는 위원회 위원, 학생복지팀,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

⑤ 참관인은 개표사무에 종사 할 수 없으며, 개표에 영향을 주는 언행은 일체 금한다.

(신설 2013. 8. 1)

제12조의 2(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신설 2013. 8. 1)

1. 교부한 투표용지 이외의 것
2. 기표가 되지 않은 것
3. 투표용지에 2인 이상이 기표된 것
4. 선거관리위원장의 검인이 없는 것
5. 기표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6. 규정이외의 표시가 있는 것

제13조(당선인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당선예정인을 결정하고, 당선예정인에 대하여 총장의 인준을 얻어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한다.(개정 2011. 3. 1, 2012. 10. 11)

1. 최고득표자를 당선예정인으로 결정한다.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학업성적 우수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개정 2012. 10. 11)

3.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 대의원회 부의장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자(무효표 제외) 3/5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 예정인 을 결정한다. (개정 2012. 10. 11, 2013. 8. 1, 2015. 9. 10, 2016. 6. 1)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절차에 의하여 당선인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 결정을 하고 학칙에 의거 처리하며 기타 관련자도 학칙에 의거 처벌한다.

1.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자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개정 2013. 8. 1)

3. 입후보 등록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

4. 개인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및 연설

5. 승인 이외의 유인물 제작 배포 및 게시물 부착
6. 개인의 인신공격 및 비관행위
7. 금품수수 및 음식물 접대, 향응을 제공하는 자(개정 2013. 8. 1)
8.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9.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학풍을 문란케 하는 행위
10. 승인 이외의 앰프·마이크·악기 등의 사용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11. 외부로부터 금품 등을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 또는 방조한 자(신설 2013. 8. 1)
12. 피선거권 자격이 없는 자 또는 피선거권을 위·변조하여 당선된 자, 부정 입후보 출마[대리출마 포함]로 당선된 자는 학기중이라도 결격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박탈하거나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학칙에 의거 처벌한다.(신설 2013. 8. 1)

제15조(질서유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투표장 및 개표장에는 선거관리위원 및 각 후보자 참관인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만이 출입을 할 수 있고 투·개표 장에서는 항상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제 3 장

제16조 - 제20조 (삭제 2013. 8. 1)

제 4 장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 간부승인

제21조(간부) ① 학생회장 산하에 「학칙」 제37조에 규정된 각 부서의 사무를 관장할 총학생회 소속 간부를 둔다.(개정 2011. 3. 1)

② 대의원회 의장 산하에 사무를 관장할 대의원 간부를 둔다.

제21조의2(간부의 임명) ① 총장은 학생회장의 추천과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회 소속 간부를 임명한다.(신설 2011. 3. 1)(개정 2012. 10. 11)

② 총장은 대의원회 의장의 추천과 학생회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소속 간부를 임명한다.

제21조의3(간부의 자격) 학생회 및 대의원회 소속 간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3. 1)

1. 해당 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해당 학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개정 2012. 10. 11)
2.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3.0(B0) 이상을 취득한자로 학적부 기재상의 유급 및 경고, 성적포기, 제적(미등록제적포함)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개정 2013. 8. 1, 2015. 9. 10)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자[실효된 형의 포함](개정 2012.10. 11, 2013. 8. 1)
5. 학생간부 또는 총학생회 소속 간부를 역임한 사실이 없는 자

제22조(임기) 총학생회 소속 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1. 3. 1)

제23조 삭제(2011. 3. 1)

제24조 삭제(2011. 3. 1)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8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지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3. (특별조치) 1985학년도 선거일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생회 간부승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3. (경과조치)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부의장, 각 학과 학회장·부학회장 선거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4. (시행세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생회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회 정 ·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서류

입후보자 구분[해당란에 “○” 표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주간	2부

기 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기함]

- | | |
|---|------|
| 1. 입후보자 신청서 | 1부 |
| 2. 선거권자 추천서 50인 이상[중복 추천 불가] | 1부 |
| 3. 서약서 | 1부 |
| 4.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 | 각 1부 |
| 5. 투·개표 참관인 추천서[당해년도 학생간부는 추천불가] | 1부 |
| 6.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 1부 |
| · 신분조회 위임장[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 1부 |
| 7. 소견문 | 1부 |
| 8. 해당학년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 사본 | 1부 |
| 9. 성적증명서 | 1부 |
| 10. 학적부 | 1부 |
| 11. 칼라사진[8×9 사이즈] | 2매 |

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1호]

학생회 정 · 부회장 입후보자 신청서

인 적 사 항	학 부/ 학과명		성 명		사 진	
	생년월일		나 이	만 세		
	학 년		학 번			
	주 소			전 화		
				핸드폰		
보 호 자	성 명		직장명 및 직위	/		
	주 소		핸드폰			
피 선 거 권 자 격 확 인	해당 학년 학생회비 납부여부			납부 <input type="checkbox"/> / 미납부 <input type="checkbox"/>		
	근신 및 벌금형[실효된 형 포함] 이상 형사처벌 사실여부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직전학기 성적	점	미 취득학점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출신고교			종 교			
<p>위 본인은 201 학년도 학생회 정 ·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_____(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p>						

[별지서식 제2호]

선거권자 추천서

학부[과]명 :

성 명 :

상기인을 201 학년도 학생회 정·부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연번	학부(과)명	학 번	학년	성 명	날 인	비 고

[별지서식 제3호]

서 약 서

성 명	
학부/학과명	
학 번	
생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201 학년도 학생회 정 ·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함에 따라 선거규칙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다음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 합니다.

1. 학생간부 선거규정 제3조 및 제14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당선 무효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 학칙, 학생회칙, 학생간부 선거규정 및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후보자의 자격박탈 및 당선무효 결정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3. 선거를 전후하여 선거문제로 야기되는 불미스러운 행위[타인을 선동, 유도하여 규칙을 위반한 행위, 음주, 소란, 기물파괴, 폭행, 피선거권 위·변조, 부정 입후보 출마(대리출마 포함) 등]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당선자는 탈락되고, 입후보자는 자격을 상실하며 대학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4. 선거를 전후하여 이권개입,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의 부조리가 발견 될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자격을 박탈하며 대학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1 . . .

입후보자 : _____(인)

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4호]

학부[과]장 추천서

학부[과]명 :

성 명 :

위 학생을 학생간부선거규정 3조[피선거권]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201 학년도 학생회 정 · 부회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학부[과]장 : _____(인)

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지도교수 추천서

학부[과]명 :

성 명 :

위 학생을 학생간부선거규정 3조[피선거권]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201 학년도 학생회 정 · 부회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지도교수 : _____(인)

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투 · 개표 참관인 추천서						
학부[과]명	학년	학 번	성 명	성별	핸드폰	날인
<p>상기인을 201 학년도 학생회 정 · 부회장 선거에 따른 투 · 개표 참관인으로 추천합니다.</p> <p style="margin-top: 100px;">201 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신 청 인 : _____(인)</p> <p style="margin-top: 50px;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p>						

※ 「당해년도 학생간부」 는 참관인 추천이 불가능 합니다.

[별지서식 제7호]

소견문	
슬로건	
공약	
201 년 월 일	
신청인 : _____(인)	
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대의원회 의장·부의장 입후보자

입후보자 구분[해당란에 “○” 표기]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주간	2부

기 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기함]

- | | |
|---|------|
| 1. 입후보자 신청서 | 1부 |
| 2. 선거권자 추천서 50인 이상[중복 추천 불가] | 1부 |
| 3. 서약서 | 1부 |
| 4.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 | 각 1부 |
| 5. 투·개표 참관인 추천서[당해년도 학생간부는 추천불가] | 1부 |
| 6.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 1부 |
| · 신분조회 위임장[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 1부 |
| 7. 소견문 | 1부 |
| 8. 해당학년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 사본 | 1부 |
| 9. 성적증명서 | 1부 |
| 10. 학적부 | 1부 |
| 11. 칼라사진[8×9 사이즈] | 2매 |

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대의원회 의장 · 부의장 입후보자 신청서

인 적 사 항	학 부/ 학과명		성 명		사 진
	생년월일		나 이	만 세	
	학 년		학 번		
	주 소		전 화		
		핸드폰			
보 호 자	성 명		직장명 및 직위	/	
	주 소		핸드폰		
피 선 거 권 자 격 확 인	해당 학년 학생회비 납부여부		남부 <input type="checkbox"/> / 미남부 <input type="checkbox"/>		
	근신 및 벌금형[실효된 형 포함] 이상 형사처벌 사실여부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직전학기 성적	점	미 취득학점부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출신고교		종 교			
<p>위 본인은 201 학년도 대의원회 의장 ·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_____(인)</p>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p>					

[별지서식 제9호]

선거권자 추천서						
학부[과]명 : 성 명 : 상기인을 201 학년도 대의원회 의장·부의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연번	학부(과)명	학 번	학년	성 명	날 인	비 고

※ 「날인」란은 서명 및 날인, 「선거권자 추천서」가 중복 및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0호]

서 약 서

성 명	
학부/학과명	
학 번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1 학년도 대의원회 의장 ·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함에 따라 선거규칙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다음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 합니다.

1. 학생간부 선거규정 제3조 및 제14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당선 무효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 학칙, 학생회칙, 학생간부 선거규정 및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후보자의 자격박탈 및 당선무효 결정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3. 선거를 전후하여 선거문제로 야기되는 불미스러운 행위[타인을 선동, 유도하여 규칙을 위반한 행위, 음주, 소란, 기물파괴, 폭행, 피선거권 위·변조, 부정 입후보 출마(대리출마 포함) 등]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당선자는 탈락되고, 입후보자는 자격을 상실하며 대학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4. 선거를 전후하여 이권개입,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의 부조리가 발견 될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자격을 박탈하며 대학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1 . . .

입후보자 : _____(인)

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학부[과]장 추천서

학부[과]명 :

성 명 :

위 학생을 학생간부선거규정 3조[피선거권]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201 학년도 대의원회 의장 ·
부의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학부[과]장 : _____(인)

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12호]

지도교수 추천서

학부[과]명 :

성 명 :

위 학생을 학생간부선거규정 3조[피선거권]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201 학년도 대의원회 의장 ·
부의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지도교수 : _____(인)

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13호]

투 · 개표 참관인 추천서						
학부[과]명	학년	학 번	성 명	성별	핸드폰	날인
<p>상기인을 201 학년도 대의원회 의장 · 부의장 선거에 따른 투 · 개표 참관인으로 추천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201 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신 청 인 : _____(인)</p> <p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1.2em;">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p>						

※ 「당해년도 학생간부」 는 참관인 추천이 불가능 합니다.

[별지서식 제14호]

소 건 문	
슬로건	
공 약	
201 년 월 일	
신청인 : _____(인)	
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